##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8조의3(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
  - 등) ①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,

피보험자,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(이하 이 조에서 "보험

계약자등"이라 한다)은 요양기관 명칭, 보험금을 청구할 진료내역 및

보험회사 등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

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요건을 갖추어 전송하여야 한다.
- 1.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
- 2.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
- 제48조의4(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) 법 제102조의6제2 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"라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  - 1.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으

로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

- 2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
- 3.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중에 있어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 한 경우
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사유
- 제48조의5(전송대행기관) 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"이란 보험개발원을 말한다.
- 제48조의6(실손의료보험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1 02조의7제4항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전산청구시스템운영위원회(이하이 조에서 "실손전산운영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과 제3호에 따른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.
  - 1.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
  - 2.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
  - 3.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
  - 4. 보험 및 의료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2인

- 5. 보건의료 및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
- 6. 법 제102조의7제2항의 전송대행기관의 임직원 1인
- 7.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 1인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제2항제1호,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(職)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④ 실손전산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실손전산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의 협의·조정
- 2. 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에 따른 원활한 전산시스템의 구축·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
- 3. 법 제102조의6에 따른 안전·편리한 실손보험 전산청구를 위한 개 선 방안의 연구
- 4. 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 평가
- ⑥ 실손전산운영위원회는 업무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⑦ 실손전산운영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·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전문위

원으로 임명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손전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제102조제3항 중 "영 제86조제2호"를 "영 제86조제2호에 따른 사무 또는 법 제102조의7제2항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48조의3(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
	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
	<u>방법 등) ① 법 제102조의6제1</u>
	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계약의
	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
	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
	(이하 이 조에서 "보험계약자
	등"이라 한다)은 요양기관 명칭,
	보험금을 청구할 진료내역 및
	보험회사 등을 확인하여 요양기
	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
	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
	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	②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보험
	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
	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으
	로 요건을 갖추어 전송하여야
	<u>한다.</u>
	1.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
	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
	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
	2.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
	호 등을 위해 암호화 등의 보
	호조치를 취하는 등 금융위원

<신 설>

<신 설>

<u>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</u> 갖출 것

제48조의4(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) 법 제102조 의6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"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- 1.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 나 손상으로 전산시스템을 사 용할 수 없는 경우
- 2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 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로 인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
- 3.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중에 있어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
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사유
- 제48조의5(전송대행기관) 법 제10 2조의7제2항에 따른 "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"이 란 보험개발원을 말한다.

## <신 설>

- 제48조의6(실손의료보험전산시스 템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102조의7제4항에 따른 실 손의료보험전산청구시스템운영 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실손전 산운영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 다.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 과 제3호에 따른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.
  - 1.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
  - 2.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추천하는 자
  - 3.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

    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

     천하는 자
  - 4. 보험 및 의료 소비자 보호와관련하여 전문성이 인정되는자 2인

- 5. 보건의료 및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
- 6. 법 제102조의7제2항의 전송 대행기관의 임직원 1인
- 7.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 1인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제2항제1호,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(職)에 재직하는 기
- <u>간으로 한다.</u>
  ④ 실손전산운영위원회의 회의
-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<u>⑤ 실손전산운영위원회의 업무</u> 는 다음과 같다.
- 1. 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의 협의·조정
- 2. 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
   7에 따른 원활한 전산시스템
   의 구축·운영을 위한 관계기
   관 간 협조
- 3. 법 제102조의6에 따른 안전·편리한 실손보험 전산청구를위한 개선 방안의 연구

- 4. 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·평가
- ⑥ 실손전산운영위원회는 업무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① 실손전산운영위원회는 상정 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 계 행정기관·공공단체나 그 밖 의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전문위원으로 임 명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손전산운영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.

제102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 보의 처리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

③ -----

영 제86조제2호에 따른 사무를영 제86조제2호에 따른 사무 또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법 제102조의7제2항------

- 제102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 보의 처리) ①·② (생 략)
  -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 제1 76조제3항제1호·제2호 및 이 영 제86조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북가피한 경우

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	
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	
할 수 있다.	
④ ~ ⑧ (생 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